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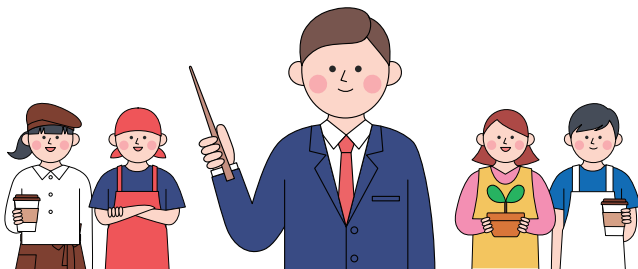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이후 신청(2022. 7. 1.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www.esingo.or.kr
-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 기업 본사 소재지 기준

제출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전국 어디서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기관명	전화	주소
공단본부	031-728-7001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640-9813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 (인계동)	
지사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 (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인천지사	032-242-1004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	052-226-1004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 (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강원지사	033-737-662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549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인후동2가)
사	전남지사	061-983-1800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3928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지사	055-225-8006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제주지사	064-710-5010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TEL : 031-728-7001-3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2022. 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지원배경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도

▶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



지원대상 및 요건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 '상시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2.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2022. 1. 1. 이후 신규고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3.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 시 유의사항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단,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가장 우선 산입

지원 기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6개월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 지원 내용

구분	지급 단가 (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 x 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 (단가 x 1년)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 단,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와 단가를 비교하여 더 적은금액 지원

